

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5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1. 08.

이쌍자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7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쌍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과 고성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 및 중대재해 예방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실태조사의 관한 내용 및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4) 중점관리대상 및 컨설팅 지원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5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0호
 - 예고기간: 2024. 11. 8. ~ 2024. 11. 13.(5일간)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군민과 고성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 ~ 제5조)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의 포함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 ~ 제10조) 민간협력기구의 구성, 중점관리대상, 컨설팅 지원,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고성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